

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0월 24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년 10월 13일

나. 제안자: 신찬호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 10. 24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신찬호 의원)

□ 제안이유

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·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(안 제6조, 제7조)

다.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(안 제8조)

라. 소상공인 보호 (안 제9조)

- 마. 소상공인 구제의 감면 (안 제10조)
- 바.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(안 제11조)
- 사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 등 (안 제12조 ~ 제15조)
- 아. 사무의 위탁 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소상공인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- 다. 해당부서: 지역경제과
- 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3. 10. 16. ~ 10. 20.) 결과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권오숙)

가. 제정취지

- 코로나19에 이은 지역경제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,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 제정내용

- 안 제1조에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·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

○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소상공인” 용어를 정의함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사업장을 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1)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

○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, 소상공인이 보호·지원의 대상이자 지역 경제발전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였고

○ 안 제5조에서는 본 조례가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과 관련하여 기본법규의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여 다른 조례와의 입법적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음

○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근거를 마련하고

○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

제8조(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)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및 창업한 소상공인의 성장·발전을 위한 사업(구에 주소를 두고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포함한다)

2.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, 노동환경 개선,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사업

1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3.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
4.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를 위한 사업
5.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화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
6. 소상공인의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,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을 위한 사업
7.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사업
8. 소상공인의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사업
9.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사업
10.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, 장비, 시스템, 서비스 등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11.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

제9조(소상공인 보호)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의 향상
2.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
3.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분야·장소·시간 등을 고려한 적합한 사업 영역의 확보

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
2.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, 취업, 재창업 등의 지원(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)
3.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
4.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및 재무관리 컨설팅 등 금융상담 지원
5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및 지원금 지급을 통한 지원 등

○ **안 제10조에서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2)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**

2) **제31조(조세의 감면)**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, 법인세, 취득세,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- 안 제11조에서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³⁾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
- 안 제12조와 안 제15조까지는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정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- 안 제16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
-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를 정비하고자 하였는데, 이는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에 관한 기본법인 「소상공인기본법」을 근간에 두고 입법적 체계성을 위해 해당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판단됨⁴⁾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2조제7호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를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”로 한다.
 제14조의1을 삭제한다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3고(3高-고금리·고물가·고환율)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
3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2(보조금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.

4) 부칙규정: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[출처: 법제처,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] 부칙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자치법규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, 관련 자치법규를 별도로 입법·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, 자치법규 개정의 시차(時差)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

- 정부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만에 엔데믹 (endemic·일상적 유행)을 선언하며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을 통한 경제 회복의 기대감이 높았으나,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되고, 최근 임대료·전기요금·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⁵⁾
-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현실에 적합한 시책 추진과 실효성있는 지원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며, 민생 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역량을 가진 소상공인들의 재도약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- 다만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예산확보나 지원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5) 총 1,43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89.7%가 “현재 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들다”고 답했다. 최근 경기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데다,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과 맞물려 이자 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 1년 전 대비 부채액 증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.4%가 “늘어났다”고 답했고,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상 보증서 담보대출의 평균 취급 금리는 2021년 말 2.40~3.09%에서 2022년 말 5.03~5.52%로 1년 사이 두 배 가량 상승했다. [출처: 소상공인연합회 ‘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’(2023. 3.)]

□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